

#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사회 전반에 걸쳐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방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, 등기기록 열람수수료 등의 납부에도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업무의 신속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, 등기기록 열람수수료, 인감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방식으로 기존의 현금 외에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방식을 추가함(안 제6조제1항)
-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(안 제6조제4항)

#### 4.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현금으로”를 “현금 또는 신용카드(제3조 중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부분은 제외한다)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제3항”을 “제1항 본문 및 제3항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.



②·③ (생략)

④ 제3항의 경우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등이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⑤ ~ ⑩ (생략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 본문 및 제3항 -----

-----  
-----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⑤ ~ ⑩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	
연락처	(02) 3480-1394